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012
----------	------

2022. 3. 16.(수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박상돈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2년 3월 8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3월 10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3월 16일

-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박상돈 의원)

가. 제안사유

○ 북한이탈주민의 공공기관 등 채용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 이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공무원 특별채용 규정 신설 (안 제4조의2)
- 인용조문 정비 및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 (안 5조)
 - 「법률시행령」 제45조의2 → 「법률 시행령」 제42조의3
충청북도지방경찰청 → 충청북도경찰청,
- 오탈자, 띄어쓰기 수정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수정
 - 호선한다 → 선출한다, 보궐위원 → 새로 위촉된 위원,
 - 사무관 → 팀장, 관계기관 → 관계 기관, 대해서는 → 대하여,
 - 위임규칙 → 위임 규칙, 수탁자 → 위탁 받은 자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남범우)

- 이번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공공기관 등의 채용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사회참여 기회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며, 주요내용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용조문 정비 및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한 명칭을 변경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 중 “수립한”을 “세운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공무원 특별채용) 도지사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특별채용 할 수 있다.

제5조제2항제2호 중 “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5조의2”를 “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2조의3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충청북도지방경찰청”을 “충청북도경찰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호선한다”를 “선출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“보궐위원”을 “새로 위촉된 위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사무관”을 “팀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관계기관”을 “관계 기관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대해서는”을 “대하여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규칙」”을 “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규칙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수탁자”를 “위탁받은 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충청북도지사 등의 책무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시장·군수는 도지사가 수립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.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제5조(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, 제1호 및 제2호는 당연직으로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	<p>제3조(충청북도지사 등의 책무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세운 ----- -----.</p> <p>제4조의2(공무원 특별채용) 도지사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특별채용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(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2.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<u>법률시행령</u> 제45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시·군에 구성된 “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” 업무담당 부서장</p>	<p>2. ----- ----- <u>법률시행령</u> 제42조의3----- ----- -----</p>
<p>3. (생략)</p>	<p>3. (현행과 같음)</p>
<p>4. 충청북도교육청, 충청북도 지방경찰청,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</p>	<p>4. ----- <u>충청북도경찰청</u>----- ----- -----</p>
<p>5. (생략)</p>	<p>5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③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<u>호선한다</u>.</p>	<p>③ ----- ----- <u>선출한다</u>.</p>
<p>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<u>보궐위원</u>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	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새로 위촉된 위원</u>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 업무 담당 <u>사무관</u>으로 한다.</p>	<p>⑤ ----- ----- ----- <u>팀장</u>----- -----.</p>
<p><u>제6조·제7조</u> (생략)</p>	<p><u>제6조·제7조</u>(현행과 같음)</p>
<p><u>제8조(회의)</u>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<u>관계기관</u>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p>	<p><u>제8조(회의)</u>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관계 기관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<u>제9조(수당 등)</u>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그 밖에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<u>대해서는</u>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<u>제9조(수당 등)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대하여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<u>제10조(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)</u> ①·②·③·④(생략)</p>	<p><u>제10조(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)</u> ①·②·③·④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제11조(업무의 위임 및 위탁) ①</u>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시장·군수 또는 <u>수탁자</u>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<u>제12조 (생략)</u></p>	<p><u>제11조(업무의 위임 및 위탁) ①</u> ----- ----- 위임 <u>규칙」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위탁받은 자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2조 (현행과 같음)</u></p>

관계법령 발췌

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
- 제18조(특별임용) ①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8조제2항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자격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.
- ②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,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8조의2(공공기관 평가 반영) ①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「정부업무평가 기본법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1. 4. 20.>

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6조(공무원의 특별임용등)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별임용은 북한의
각급 행정기관,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희망 분야의 관
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
에 한정한다.

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에
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
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(이하 이 조에서 “인사혁신처
장등”이라 한다)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, 인사혁신처장등은 그 결과를 통
일부장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
11. 19.>

④ 인사혁신처장등은 보호대상자를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
특별채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
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>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 제4항 중 제1호에 해당함.

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
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1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 2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○ 사 유

-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특별채용에 있어 채용형태(공무원, 임기제, 공무원직, 기간제 등)와 채용범위는 조례개정 이후 심의, 결정되는 바
-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- 또한,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해 명칭변경을 위한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